

[별표 2]

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

(제3조제2항 관련)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전기 안전	무선	유선	SAR
1. 산업·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: 산업·과학·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(「전파법」 제58조의3제1항제4호 나목 및 바목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)	산업용 고주파이용기기류	○				
	과학용 고주파이용기기류	○				
	의료용 고주파이용기기류	○				
	가정용 고주파이용기기류	○				
2.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: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(「전파법」 제58조의3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, 이륜자동차,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)	자동차 기기류	○				
	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	○				
	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(자동차 전장품)	○				
3. 방송수신기기 및 관련기기류 :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(「전파법」 제58조의3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기기는 제외)	음성방송 수신기기류	○	○			
	텔레비전방송 수신 기기류	○	○			
	PC 튜너 카드류	○				
	기타 방송수신 관련 기기류	○	○			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분야					
		전자파 적합성	전기 안전	무선	유선	SAR	
4.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: 가정용 전기기기, 휴대용 전동공구,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(「전파법」 제58조의3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기기는 제외)	가정용 전기 기기류	○					
	휴대용 전동 공구류	○					
	전기가열장치류	○					
	기타 전기기기류	○					
5.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: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(「전파법」 제58조의3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기기는 제외)	조명기기류	○					
	기타 조명 관련 기기류	○					
6.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		○					
7. 정보기기류 :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이거나, 데이터 및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, 저장, 출력, 검색, 전송, 처리, 스위칭, 제어 중 어느 하나(또는 이들의 조합)를 주요 기능으로 가지며,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	컴퓨터류	○	○				
	컴퓨터 주변기기류	입력장치류	○	○			
		출력장치류	○	○			
		외장형 저장 장치류	○	○			
		컨트롤러류	○	○			
		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	○	○			
	컴퓨터 내장구성품류	보드류	○				
		저장장치류	○				
		전원공급기	○	○			
		컨트롤러류	○	○			
기타 컴퓨터 내장구성품류	○						
기타 정보기기류	○	○					
8.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(「전파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)		○	○				
9.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: 무선설비규칙 제97조 각 호의 규정을 만족하는 기기		○	○	○			
10.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기기류		○	○				
비 고 ○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중 무선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							